해외ETP 설명서

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-010호
(심의일:2024.01.23)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해외ETP는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 해외ET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	- 해외ETP(Exchange Traded Product)는 기초자산과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으로 해외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(상장지수펀드), ETN(상장지수증권) 등을 의미하며,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. ■ 해외ETP 중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이며, 'ETF'와 거래방법은 유사하나,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이 상이한 파생결합증권입니다. ETN 거래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, 기초자산,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 ■ 레버리지 ETP는 기초자산 일일수익률의 1배, 2배, 3배 등 배수를 추종하며,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때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의 변동폭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 ■ 인버스 ETP는 기초자산 일일수익률의 역을 추종하며,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을 기대할 때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국내주식거래와 비교 시 외국 통화 증권의 거래에 따른 **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,** 증권시장 개장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국내법상의 공시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**투자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용이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**가 존재하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발생가능한 불이익사항, 손실 가능 상황 및 손실추정액	**해외ETP는 시장상황 및 환율변동, 자산가격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 ~ 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** **(원금손실위험)** 레버리지/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수익률에 레버리지/인버스 승수를 곱한 수익률을 추종합니다.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하는 ETP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**(복리화 효과 위험)** 레버리지/인버스 ETP는 복리효과가 있으므로, 기초자산의 단순 수익률과 ETP의 실제 수익률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해당 ETP를 장기 보유할 경우 기대한 수익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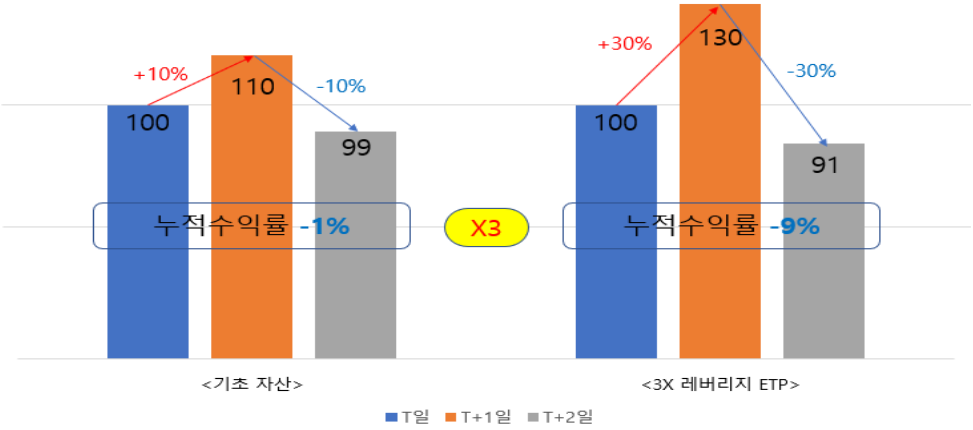

※ (예시)
레버리지가 3배인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일(T)에 100인 경우, 다음날(T+1일) 10% 상승하고 그 다음날(T+2일) 10%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면, T+1일의 ETP의 순자산가치는 130(=100+10%*3)이나, T+2일에는 전일 증가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3배만큼 하락하므로, 91(=130-130*10%*3) 입니다.

(발행사 신용위험) 해외 ETP의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(ETP를 발행한 회사의 부도 등 급격한 재무적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)이 존재하며,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한, 기초자산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(병합·분할위험) 해외 ETP의 경우, 발생회사의 사정에 따라 병합·분할 등의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권리 사항으로 인해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ETP의 매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(가격괴리위험) 매수-매도간 수급 불일치 등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추적오차(기초자산과 ETP의 순자산가치의 차이)와 괴리율(기초자산과 시장에서 형성된 ETP 가격의 차이) 등으로 인해 ETP의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순자산가치의 값이 실제 값보다 과대/과소 측정될 수 있습니다.

(환율변동/거래비용위험)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거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추가 손실(원화의 평가 절하시에는 추가 이익)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이 존재하며,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P에 비해 거래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.

(제비용 발생위험) ETP의 투자 대상 자산이 지수 또는 파생상품을 포함하거나 원유, 천연가스 등과 같은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롤오버비용*, 이자비용 등 운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 Roll-Over, 선물 만기 시 포지션 이월(선물 월물 변경)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

(보유기간위험) 파생상품 ETP를 1영업일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신탁보수, 위탁매매수수료, 복리효과 등에 따라 당해 ETP가 추구하는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(해외투자위험)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ETP와는 다르게 정보의 접근 및 취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, 정보 제공시에도 해당 국가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정보취득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.

	(세제 및 법률상 위험) ETP가 상장된 국가의 법령 및 제도 등에 따라 세금납부, 거래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제처리 절차 또는 현지 사정 등에 의해 결제대금 및 배당금 지급일정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ETP 종목별 배당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원천 징수되는 배당세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, 고객이 세금을 환입하거나,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. ETP를 보유하여 발생하는 분배금(배당금)은 국내주식의 배당처럼 다른 금융소득들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, '금융소득종합과세'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. **기타 자세한 위험은 종목별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민원 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	**Q. 해외ETP 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?** A. 해외ETP는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'공격투자형'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. 거래를 위해서는 해외ETP 거래 약정(앱 > 관리 > 거래설정 > 파생상품거래 > 해외ETP)을 체결해야 합니다. 해외ETP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으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됩니다. **Q. 해외ETP와 국내 ETF 및 ETN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?** A. 해외ETP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, 국내 상장된 ETF·ETN에 비해 거래비용(환전비용 등)이 높을 수 있습니다. **Q.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해외ETP는 보유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과 차이가 있나요?** A.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해외ETP는 기초지수의 일일수익률에 대하여 2배 이상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레버리지 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 복리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의 단순 수익률과 해외ETP의 실제 수익률 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**Q. 만기가 있는 해외ETN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나요?** A. 만기가 있는 해외ETN은 발행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, 만기 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(파산, 회생절차, 유동성 부족 등)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*Q. 해외 ETP가 청산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** A. 해외 ETP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. 청산으로 인해 분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,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더불어 배당소득이 과세되어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해외ETP 설명서

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-010호
(심의일:2024.01.23)

위험등급

- 해외ETP: 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

※ 당사는『투자권유준칙』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, 투자위험등급은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에서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
***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예시**

상품위험등급	**1등급 매우 높은 위험**	**2등급 높은 위험**	**3등급 다소 높은 위험**	**4등급 보통 위험**	**5등급 낮은 위험**	**6등급 매우 낮은 위험**
투자자성향	**공격투자형**	**공격투자형**	**적극투자형**	**위험중립형**	**안정추구형**	**안정형**
주식	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신용거래 **해외주식**	국내주식				
ETF	**파생형ETF** **해외ETF**	국내ETF				

※ 투자자 성향별 적합한 상품

투자자성향	**공격투자형**	**적극투자형**	**위험중립형**	**안정추구형**	**안정형**
적합 상품	전체 상품	3등급 이하 상품	4등급 이하 상품	5등급 이하 상품	6등급 이하 상품

계약기간 계약의 해지·해제 관련사항

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,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.

(계약해지 사유)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근거에 따라 해소하며,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고객이 회사에 약정해지 신청을 한 때
-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

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거래 수수료

- 해외ETP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수수료, 증권거래세, 기타부과금, 위탁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(https://kakaopaysec.com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환전 수수료

- **환전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고시환율의 1% 내외로 정해집니다.**
  (단, 외국환은행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기타 수수료

- 매매수수료 외에도 외화증권을 거래하거나 보유함으로 인해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 가능합니다.

기타 세금

PTP(Publicly Traded Partnership)* 종목 매도 세금

-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(IRS)의 세법 1446(f)*에 근거하여 미국주식 중 PTP 종목**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매도금액의 10%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합니다.

*IRS 1446(f) 란?
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 종목을 매도할 때, 매도 금액의 10%를 원천징수 하도록 IRS(미국 국세청)가 신설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되며, 국내 전 증권사 공통사항
** PTP(Publicly Traded Partnership) 종목
통상적으로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,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파트너십 회사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며, MLPs(Master Limited Partnerships)로 지칭

- 2023년 1월 1일 매도 체결분부터 보유기간이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10%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PTP매도 세금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PTP 종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PTP 종목 리스트는 회사 홈페이지(https://kakaopaysec.com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, 해당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들도 미국 국세청에 의하여 PTP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, 리스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PTP 종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조건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면제 조건은 자산운용사가 수익이 "US trade 또는 business"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거나, 10%이내라는 사실을 Qualified Notice(QN)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- PTP 종목은 과세 및 보고 등의 사유로 입/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PTP종목 매도세금은 매도대금 결제일+2영업일에 출금되며,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없는 경우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PTP 종목의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민원처리·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

상품 및 서비스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카카오페이증권: 홈페이지(https://www.kakaopaysec.com) ≫ 고객센터 ≫ 소비자보호포털 ≫ 민원접수
- 금융감독원: 금융민원센터 (https://www.fcsc.kr)
- 한국금융투자협회: 홈페이지(https://www.kofia.or.kr) ≫ 투자자지원센터 ≫ 분쟁조정제도

금융소비자 권리안내

구분	위법계약해지권	청약철회권	자료열람요구권
내용	금융회사가 판매규제(적합성·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행위 금지)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	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	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해외ETP 약정 해당 여부	ETF는 위법계약해지 대상	X	O
신청방법	-	-	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(고객센터 ≫ 소비자보호포털 ≫ 공시/안내 ≫ 금융소비자보호법)

금융사기 예방

금융사기,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.

1. 계좌 지급정지 신청 :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
2.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: 경찰서 (112)
3. 피해구제 신청: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(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)
4. 개인정보노출 등록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https://pd.fss.or.kr)

※ 금융사기란?

전화, 메신저,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.